

## 민주노총 4. 28 불법 총파업·총력투쟁에 대한 의견

- 민주노총의 4월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법 개정 사항 및 정부 노동정책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투쟁임.
- 정부는 금번 노동계의 불법 총력투쟁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임.
- 정부가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치 못할 경우에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특히 노동계가 5월 이후 지자체 선거 정국을 활용한 대(對)정부 투쟁과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정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1] 개황

-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Time-Off제도 시행을 앞두고 4월말 대(對)정부 투쟁 돌입 선언
- 민주노총은 4. 26 ~ 5. 1을 「제1차 총력투쟁주간」으로 선정하고 4. 28(水) '노조전임자 기득권 유지 및 노동관계법 재개정, 정부의 노동정책 분쇄'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예고
- 민주노총은 4. 28 투쟁 이후에도 산하 조직별로 적극적인 4월 ~ 5월 투쟁을 조직한다는 방침인 바, 산별 임단투 등의 영향으로 인한 상반기 노사관계 혼란 우려

< 참고 > 민주노총 산하 주요 조직 상반기 투쟁 계획

구분	4. 28 투쟁 관련 상황	상반기 투쟁 계획
건설산업연맹	13,000여명 상경 집회 참여 예정	4. 28 이후 현장 산개 투쟁 계획
공공운수연맹	확대간부 위주 집회 참여	
철도노조 화물연대		4. 30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전개 계획 <지역본부별 순회 집회 또는 교육 진행>
공무원노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집회(5. 15) 참석 (1만명 참여 목표)
금속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참여	5월초 타임오프 관련 투쟁 진행 계획
보건의료노조		5월초 타임오프 관련 투쟁 진행 계획
사무금융연맹	투기자본 및 협동조합 산경 분리 저지 투쟁	
전교조	확대간부 이상 참여	5. 16 전교조 탄압중단 전국교사 대회
화섬연맹		5월초 시기집중 임단투

## ② 민주노총 투쟁의 불법성 및 문제점

-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 법 개정 사항 및 정부 노동 정책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명백한 불법 파업임.**
- 민주노총은 총파업 및 총력투쟁(4. 28)의 목적으로 '개악노조법·노동운동탄압 등 노조말살정책 중단'과 '근면위의 노조무력화 책동 중단'을 내세움.

< 참고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는데 있어야 한다. 즉,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1. 10. 25, 99도4837 등).

쟁의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정치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파업은 소위 정치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09.12.23 2009누6751).

- 금번 민주노총의 투쟁에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굴삭기 및 덤프 기사)가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됨. 동 건설기계분과는 상당수의 지입차주가 가입되어 있어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금번 민주노총 투쟁에 특수형태종사자인 덤프기사 등이 참여할 경우 이는 **불법집단행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는 산별교섭 강제와 (노조전임자 관련)특별교섭을 명분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투쟁 등 대(對)정부 투쟁 전개 계획
-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와 금속노조가 신청한 조정은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산별교섭 강제 및 노조전임자의 기득권 유지)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투쟁과는 별도의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 **산별노조들이 민주노총의 4. 28 투쟁에 참여하는 것 역시 불법임.**

### ③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 민주노총은 금번 4월 투쟁을 시점으로 2010년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 바, 민주노총의 금번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금년도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임.
  - 지난 정부의 경우 민주노총의 2006년 2월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불법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2006년 1년간 14회에 걸친 중앙단위 불법 총파업 전개

#### < 참고 > 민주노총 2010년 투쟁 계획

- |                 |                               |
|-----------------|-------------------------------|
| · 4. 26 ~ 5. 1  | : 제1차 총력투쟁 주간                 |
| · 4. 28         | : 총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
| · 5. 1          | : 전국노동자대회                     |
| · 5. 15         | :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 · 5. 16         | : 전교조 전국교사대회                  |
| · 5. 23         | :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제        |
| · 6월초           | : 산별노조 중심의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        |
| · 6. 14 ~ 6. 30 | : 제2차 총력투쟁 주간                 |
| · 6. 29         | :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전국노동자대회          |
| · 9월 이후         | : 국정감사 대응 투쟁                  |
| · 11. 13        | : 전국노동자대회                     |
| · 11월 ~ 12월     | : G20 관련 국제 연대 투쟁 및 법제도 개정 투쟁 |

- 또한, 노동계는 지자체 선거(6. 2)를 앞두고 공권력 행사가 느슨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불법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원칙적 대응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하반기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정부가 불법 투쟁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할 경우에는 노사관계 혼란은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까지 우려됨.

\* 첨부 : 민주노총의 「4월말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대한 경영계 지침(p. 1)

# 민주노총의 「4월말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대한 경영계 지침

- 민주노총은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4대강 사업중단’ 등을 주장하며 4. 28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임.
  - 민주노총의 금번 투쟁은 현 정부 출범이후 악화된 노정관계 주도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압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후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대비해 유리한 정국을 형성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을 판단됨.
  - 특히, 근로자가 아닌 덤프 등 건설기계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기득권 유지를 위한 특별단체교섭 수용을 사측에 강제하고자 투쟁동력 결집에 나서고 있어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금번 민주노총의 불법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함. 그래야만 금번 노동계의 불법투쟁이 6월 하투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합법적 노동운동만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해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에 동조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복장투쟁, 선전투쟁, 준법투쟁 등의 어떠한 단체행동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불법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또한, 불법파업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도 각종 교사, 방조, 공모 공동정범 등의 책임을 철저히 물도록 함.
- 노조의 총파업 참여 여부 및 이에 대한 사측의 대응결과를 정보 공유차원에서 분회 노사대책1팀(T. 3270-7315/7316)으로 통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